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계획위원회(소위원회) 자문안건 검토보고(역삼동 708-4호 외 5필지)

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708-4호 외 5필지에 관광숙박시설 및 업무시설,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수권소위원회 위임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(소위원회) 자문상정 하고자 합니다.

□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
구 분	계 획 내 용	
	기 정	변 경
건축물용도	-	관광숙박시설(지정)
용적률(상한)	-	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※ 인센티브 용적률 318.6% 이내
차량출입 불허구간	도면상 폭 3m 허용구간 지정	도면상 폭 5m 허용구간 지정
그 외 사항	기재생략	변경없음

첨부 : 도시계획위원회(소위원회) 자문상정(안) 1부. 끝.

주우관 남명준 도시관리팀장 임태웅 도시계획과장 대리근태 도시환경국장 06/10 배경섭

협조자